

August 12, 2022

2022년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사항

행정안전부는 2022. 8. 11.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2022. 7. 2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 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2. 8. 12.부터 2022. 9. 1.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2. 9. 22. 차관회의 및 2022. 9. 27.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2022. 9월 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본회의 의결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바, 개정법은 대부분 2023.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지방세기본법

1.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항)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한,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로서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동반개정사항이며,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종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던 것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 정 의

전문위원

T 02.3404.7353

E jeongui.oh@bkl.co.kr

조 학 래

공인회계사

T 02.3404.0580

E hakrae.cho@bkl.co.kr

이 은 홍

공인회계사

T 02.3404.0575

E eunhong.lee@bkl.co.kr

사청구 결정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동반개정사항이며,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지방세기본법 제89조)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을 지방세 불복 청구 대상으로 추가·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2항)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규정을 명확화하여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동반개정사항이며,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처분청의 처분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I. 지방세법(취득세)

1.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지방세법 제7조)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과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취득세 과세원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를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건축물은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 토지는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 지목변경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면적 기준 지목변경**의 경우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은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와 동시개정되는 사항이며,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3. 1. 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지방세법 제11조)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 해석과 예규에 의하여 무상의 경우 3.5%, 유상의 경우 4%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을 대가 관계로 보아 **통일적으로 유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II. 지방세법(지방소득세)

1.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 제103조의34 제2항)

국세 개정사항과의 연계 및 간접투자회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은 법인투자자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위해,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고 이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준 -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여, 종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세율 2%,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세율 2.2%, 3,000억 원 초과 세율 2.5%에서,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는 세율 **2%**(단,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1%**),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는 세율 **2.2%**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동반개정사항이며, 개정안은 2023.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IV. 지방세특례제한법

1.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등)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에 임대차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화하기 위해, 총칙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8호)에서 “임대는 제외”토록 명시하고, 일부 개별조문에서 임대를 제외토록 규정한 문언을 삭제하였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항 등 16개 조문).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련하여, 종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10%p 추가 감면되던 것을, **15%p** 추가 감면되는 것으로 감면 폭을 확대하였으며, 일몰기한도 종전 2022. 12. 21.에서 **2025. 12. 31.**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제1항,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50%,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토록 하고,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은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종전 2022. 12. 31.에서 2025. 12. 31.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중복 특례의 배제 명확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지방세 감면 제도의 합리성 및 통일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던 '중복 감면' 용어를 '중복 특례'로 명확화하여 중과세 배제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제 범위는 동일 세목에 한정토록 명확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

BKL 조세 그룹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M&A 등 기업구조조정, 각종 투자사업, 무역거래, 자산양수도, 자본거래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조세문제와 상속, 증여계획 수립 등 제반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조세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세무자문에서 조세쟁송까지 조세 이슈 전반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